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81 발의연월일: 2024. 8. 26.

발 의 자:오세희·김남근·민병덕

주철현 • 염태영 • 채현일

복기왕 • 이재관 • 박홍근

이재강 • 서미화 • 문금주

김승원 • 조인철 • 강준현

박희승 • 허성무 • 박해철

김현정 · 정진욱 · 권향엽

의원(21인)

제안이유

기업경제 촉진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1999년 舊「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의 발행업체·발행방식 및 종류가점차 다변화되고 있음.

상품권 발행 시 발행자는 선수금을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는 구매 물품 및 시기의 선택 폭을 넓혀 주는 등의 이점이 있으나, 상품권의 불법유통, 발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문제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해피머니 상품권의사용중단으로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권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을 마련하였으나 그 구속력에 한계가 있어이용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이에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상품권의 발행과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발행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법인 인 상품권 발행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 발행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안제5조 및 제7조).
- 다. 상품권 발행자가 유효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보며, 상품권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을 제시하는 자에게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상환하겠다는 뜻을 상품권에 명시하

여야 함(안 제9조).

- 라. 금융위원회는 상품권이용자의 보호 및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본금, 출자금 및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간발행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음(안 제10조).
- 마. 상품권발행자는 상품권이용자 보호를 위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상품권의 발행보증 금으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에 갈음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바.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의 상품권발행자등은 상품권이용자에 게 현금 환급에 우선하여 해당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상품권이용자가 해당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는 등 상품권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함(안 제13조).
- 사. 상품권발행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법률에 명시한 일 정액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 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재원을 다 른 운영재원과 분리하여 상품권이용자의 피해보상사업, 상품권 유 통질서 조성사업, 그 밖에 상품권이용자의 권익보호사업을 위해 사

용하여야 함(안 제20조).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권의 발행과 상환,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하고, 상품권이용자가 상품권의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액상품권: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 나. 물품상품권: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

권

- 다. 용역상품권: 상품권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 권
- 2. "상품권이용자"란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상품권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3. "권면금액(券面金額)"이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말한다.
 - 가. 금액상품권: 상품권면에 기재된 금액
 - 나.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 상품권이용자가 상품권발행자등 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의 발행일 현재의 가액
- 4. "상환"이란 상품권발행자등이 상품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혂금으로 확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표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 2. 승차권 등 예매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공연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 는 이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의 선불카드

- 5.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제15호의 전자화폐
- 6.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이 법을 적 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상품권의 발행

- 제5조(상품권의 발행) ①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상호 및 주소
 - 2. 자본금 또는 출자금
 -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사업부문의 매출 액에 한정한다)
 - 4. 발행하고자 하는 상품권의 종류・권면금액・상표 및 서식
 - 5. 상품권의 발행예정금액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상품권발행자의 지위승계) ① 상품권발행자가 그 상품권의 발행에 관련된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그 영업에 관하여 법인의 합병·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상품권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승계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상품권 발행폐지의 신고 등) ① 상품권발행자가 그 상품권의 발행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법인인 상품권발행자가 합병 외의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발행자(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을 말한다)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상품권의 기재사항) ① 상품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상품권이라는 문자
 - 2. 발행자의 성명 또는 상호
 - 3. 발행자의 주소 또는 주된 영업소나 본사의 소재지
 - 4. 권면금액 및 상환대상물의 내용

- 5. 상환장소
- 6. 발행연월일 및 발행번호
- 7. 유효기간(유효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8. 발행자의 기명날인
- 9. 발행신고 사실(제5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에 한정한다)
- 10. 제14조에 따른 공탁물의 배당 또는 제15조에 따른 피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4호의 사항을 기재할 때에는 금액상품권에는 금액을, 물품상품권에는 물품의 품질·규격·수량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그 가액을, 용역상품권에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그 가액을 기재하여 상환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내용을 상품권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 같은 항 제5호·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을 상품권 외의 별지 사용안내서에 기재하여 상품권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권면에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9조(유효기간) ① 상품권발행자가 유효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본다. 다만,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유효기간 또는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 상품권은 유효기간을 정하

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③ 상품권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 상품권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면금액의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상환하겠다는 뜻을 상품권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상품권발행자등은 상품권이용자가 제3항에 따라 명시된 대로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상품권 발행의 제한) ① 누구든지 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
 - 2.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이미 신고한 자가 사용하고 있는 상품권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품권이용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 3. 그 밖에 상품권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최고한도(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기록되는 상품권의 경우 충전잔액을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상품권이용자의 보호 및 상품권 유통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본금, 출자금 및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간발행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연간발행한도 등을 제한하 거나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1조(공탁) ① 상품권발행자는 매 분기마다 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그가 발행한 상품권 중 상환되지 아니한 상품권의 권면금액 총액(이 하 "미상환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상품권의 발행보증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상품권발행자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품권 발행 전에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상품권발행자가 공탁한 금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탁하여 야 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족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상품권발행자의 신용상태의 악화 등으로 상품권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시점에서의 공탁금이 미상환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로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탁은 상품권발행자의 주된 영업소 또는 본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하여야 하고, 공탁을 한 상품권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⑥ 상품권발행자는 매 분기마다 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공탁금 총액이 미상환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그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 ⑦ 공탁물의 종류, 공탁의 시기, 공탁물의 반환, 그밖에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상품권이용자 피해보상계약) ① 상품권발행자는 제11조에 따른 공탁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권이용자 피해보상계약(이하 "피해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피해보상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 2. 상품권이용자의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 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 계약
 - ② 상품권발행자는 제1항의 피해보상계약에 따른 지급보증액이 제 11조에 따라 공탁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추가로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상품권발행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피해보상계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등

- 제13조(상품권의 상환 등) ①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의 상품권발 행자등은 상품권이용자에게 현금 환급에 우선하여 해당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물품 또는 용역의 제 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상품권이용자가 해당 상품권의 권면금 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 ② 금액상품권의 상품권발행자등은 상품권이용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상품권발행자등은 상품권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상품권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공탁물의 배당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공탁을 한 상품권발행자가 미상환 상품권의 잔액을 상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상품권발행자가 공탁한 공탁물을 출급하여 미상환 상품권의 소지자(이하 "미상환채권자"라 한다)에게 배당을 실행할 자(이하 "권리실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권리실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미상환채권자는 권리실행자에게 상환받지 못한 금액을 신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④ 권리실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신고의 기간·방법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⑤ 권리실행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금액의 합계액과 소요비용을 합산한 총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 ⑥ 권리실행자는 출급한 공탁물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상환채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 ⑦ 제11조에 따라 공탁을 한 상품권발행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배당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없다.
- 제15조(피해보상금의 지급) 제12조의 피해보상계약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 제16조(장부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상품권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권 발행업무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권 발행신고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제17조(발행실적 등의 보고) ① 상품권발행자는 매 분기마다 상품권의 발행실적 및 분기만료일 현재의 미상환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 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보고 및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발행자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영업소를 출입하게 하 여 상품권의 발행 또는 상환실태 등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19조(업무개선명령) 금융위원회는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발행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20조(미상환상품권수익의 출연) ① 상품권발행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상품권 가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환하기로 명시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미상환상품권수익"이라 한다)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② 서민금융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출연받은 미상환상품권수익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1. 상품권이용자의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
 - 2. 상품권 유통질서 조성
 - 3. 그밖에 상품권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의 시행
 - ③ 서민금융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출연받은 미상환상품권수익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출연금액의 산정 기준, 출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적용의 일부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자기발행

형 상품권(상품권발행자에 한정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상품권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상품권발행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및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2조(사업의 폐지 및 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상품권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사업의 폐지 또는 3년의 범위에서 상품권의 발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8조를 위반하여 상품권을 발행한 경우
 - 2.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제10조제2항에 따른 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상품권을 발행한 경우
 -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여 상품권을 발행한 경우
 - 5. 제11조에 따른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13조에 따른 상환의무를 위반한 경우
 - 7.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작성·비치·보존의 무를 위반한 경우
 -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경우
 - 9.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제출·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 정당한 이유 없이 제19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 명령을 받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상품권을 발행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권한의 위임)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 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상환상품권수익을 출연하지 아니한 자
 -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정지기간 중에 상품권을 발행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4항에 따른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여 상품권을 발행한 자
- 3. 제11조에 따른 공탁이나 제12조에 따른 보증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하고 상품권을 발행한 자
- 4.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상환 또는 환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품권으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상품권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자
-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1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2. 제8조를 위반하여 상품권을 발행한 자
 - 3. 제9조제3항에 따른 명시의무를 위반한 자
 -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ㆍ비치ㆍ보존하

지 아니하거나 장부 등에 허위로 기재한 자

- 5.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6. 제19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 ·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상품권의 발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자로서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상품권발행자가 출연한 미상환상품권수익의 관리 및 운용